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00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사무 등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부담금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6조본문, 제7조제2항, 제8조본문)

- 1)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함

나. 기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 등 현행화(안 제8조본문, 제9조본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자원안전팀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 전자우편 : yhplus@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전화 (044) 203 - 5181, 팩스 (044) 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